

업무개시 명령 계획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거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정상적인 화물 운송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할 계획이니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2022. 12. 8.

국토교통부장관